「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개정문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집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기금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현물(부동산, 그림, 도서 등) 기부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장과 위원)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국제처장
2. 서 기: 대외국제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발전기금 담당자(1), (초청위원) 내부감사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국제처장
2. 서 기: 대외국제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학과(부)장, 5급이상 전 직원
4.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04.19.]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금 접수와 관리) ①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국제처에서 관장한다.
② 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처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증물품은 대외국제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접수는 대외국제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 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한다.
⑤ 기부금의 모금, 관리 등 비용의 부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
1. 기부약정서에 환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2.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3. 행정상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
⑦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기부금의 집행 권한이 대학이나 학과가 아닌 개인에게 있는 경우
2. 연구소 기부금을 소속 관련 교수의 친인척, 강사, 소속 대학원생이 기부할 경우
3. 기부자의 기부 조건이 대학의 설립 이념과 맞지 않을 경우

⑧ 다음의 경우에는 연구소(센터)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1. 기부자가 연구소(센터)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2. 해당 연구소(센터) 수상 상금인 경우
3. 그 외 특별한 경우에는 발전기금기원회 결의를 통하여 기부금을 받을수 있다.
[제목개정 2021.04.19.]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고) ① 대외국제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무처는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국제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국제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재무실"을 "재무처"로 한다.

제10조,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5조 및 제18조의2 중 "대외협력처"를 각각 "대외국제처"로 한다.

제15조 중 "재무실은"을 "재무처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지급하되 「발전기금"을 "지급하되 「발전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